

울산지방법원 2024. 8. 8 선고 2024나1178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울산지방법원 2024. 8. 8 선고 2024나11788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24. 3. 29 선고 2022가단130080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

담당변호사 황유리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환

변론종결 2024. 7. 18.

판결선고 2024. 8. 8.

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. 3. 29. 선고 2022가단130080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8. 23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D에게 울산지방법원 2022. 8. 23. 접수 제900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제1심판결 이유 1. 나. 3)의 다)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,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
【고쳐 쓰는 부분】

『다) 살피건대,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의 남편 G이 2022. 8. 23. 10:14경 D의 딸 I 명의의 계좌로 20,000,000원을 송금한 사실, H이 같은 날 12:23경 G에게 1,000,000원을 송금한 사실(피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‘H이 D로부터 5개월치 이자로 현금 2,000,000원을 받아 그 중 1,000,000원을 G에게 송금한 것이다’라고 주장한다)은 인정되나, 이러한 사실 및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H이 작성하였다는 D 명의의 차용금증서[2023. 6. 7. 제1심법원에 서증으로 제출된 을 제7호증. 참고로 원고의 위임을 받은 추심전문회사인 J 대전지점이 2022. 9. 22. 피고 측으로부터 입수한 차용금증서(갑 제6호증)의 채권자 란이 공란인 것에 반하여, 피고가 제출한 위 차용금증서는 채권자 란에 피고의 기명이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] 등

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D 사이에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. 설령 피고가 D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,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유진현, 판사 박성규, 판사 설정은